

#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73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조정훈 · 이현승  
고동진 · 광규택 · 우재준  
이만희 · 최보운 · 김기웅  
김선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, 60세 이상의 노인,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,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.

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2호).



##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”을 “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신고의무 등) ①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조(신고의무 등) ① (현행과<br>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br>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<br>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<br>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<br>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<br>여야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아동, 60세 이상의 노인, 그<br>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<br>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<br>당하는 <u>의료인 및 의료기관의<br/>장</u>              | 2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<br/>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<br/>간호조무사</u> |
| 3. ~ 8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~ 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   ·    ④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   ·   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